대학 내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 안내

1. 제도 개요

- 우리 대학 학생이 교내 활동, 수업, 실습 및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

2. 보험별 보장 내용

구분	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	학생실습종합보험	연구실안전보험
적용 대상	재학생, 신입생 (휴학생 제외)	석사 3~4학년 재학생	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수행 대학(원)생
적용 상황	교내활동, 수업 중 사고 https://myip.kr/HCvJi	실습 중 사고	연구실 사고 (실험·연구 중)
치료비	1인당 최대 100만원 (실비)	-	최대 20억원 (요양급여)
상해 사망·후유장해	해당 없음	1인당 최대 1억원	최대 2억원 (장해·유족급여)
배상책임(대인/대물)	대인: 2억원 / 대물: 1천만원	대물: 500만원해당 없음	
추가보장	-	-	입원급여(1일 5만원↑), 장의비(1천만원↑)
자기부담금	없음	2만원	없음
보상 기간	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청구	임상실습 기간	연구활동 중 사고 전반 보장
청구 절차	사고신고(대학 행정실) → 서류제출(대학 행정실) → 서류 확인(본부·연구실안전관리센터) → 보험사 심사 → 보험금 지급		